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신용보증규정 개정을 위한 이사회 상정(안)

「신용보증규정」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'16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기

- 한국신용정보원의 「제2015-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사항 안내」 (신용정보부-76, 2016.1.12.)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민법개정에 따른 신용보증약관, 약정서 등 제·개정 알림」 (보증 2016-2091, 2016.1.22.)

2. 주요 개정내용(세부내용 <붙임>문서 참조)

- 신용정보 관리기관 및 규약명칭 변경 반영
- 민법개정에 따른 보증채무최고액을 보증조건으로 운영

- 붙 임 : 1. 신용보증규정 개정(안) 1부.
2. 신용보증규정 개정前 전문 1부.
3. 신용보증규정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

이사장

협조자 전략기획실장

감사실장

보증지원부

감사번호

37

시행 보증지원부-94 (2016.02.18.) 접수 (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pym1222@seoulshinbo.co.kr / 공개